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대표발의, 13575호)에 대한 검토의견

2019. 2. 22.

1. 제안이유

글로벌 M&A시장의 투기자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상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권 경쟁에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의 다양한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수단이 거의 없어, 과거 해외 투기 자본인 소버린은 SK텔레콤으로부터 약 9,000억원을,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은 KT&G으로부터 약 1,500억원의 이익을 얻어 국부유출 논란이 있었음. 금액만으로 보면 이 두 회사가 취한 1조가 넘는 이익은 현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금액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까지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비용은 훨씬 늘어나는 현실임.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되, 그 도입과 활용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법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함께 규정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신주인수선택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허용하여 지배주주의 경영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양질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하고, 주주에게는 고배당 기회 확대 등 효율적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이사 등 경영진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책임과 관련하여 독일 주식법, 미국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 독일과 미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단 경영자의 판단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경영자의 과오를 증명해야 함.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행위를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추정하지 않아 이사 스스로 경영판단에 과오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 없이 법관의 해석에 의존해 일관성 없이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제2항, 제344조의3제2항 및 제369조제1항).

나.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

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특별배임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정상참작을 하도록 함(안 제382조제2항 단서 및 제62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4까지 신설).

라. 회사가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각각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안 제330조,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5 신설).

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함(안 제4

32조의6 신설).

사.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의 사유,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등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432조의7 신설).

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행위의 유지(留止)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8 신설).

자.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9 신설).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생 략)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株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417條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 ------ 제417조 및 제432조의2제4항、제5항--.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수 및 행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은 제289조제1항의 정관에 기재하거나 총주주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수 및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 의결권의 수가 다르거나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을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	② ----------. ------ 의결권의 수가 다

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르거나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
第369條(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단서 신설>	第369條(議決權) ① ----------.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생 략)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신 설>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

	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3. 주주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③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정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주주의 1인 또는 여럿이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2.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 및 이 경우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④ 회사가 제3항제1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① 제4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 후 지체 없이 그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적어도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의 개시일 2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신수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② 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8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신 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 및 제516조의10을 준용한다. ③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가 제432조의2제3항제2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 및 상환의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제4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2조의3제4항 중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의 개시일”은 “제432조의7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로 본다. ③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없다.
<신 설>	제432조의8(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留止)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32조의9(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51조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33조제1항을 준용한다.
第622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會社의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이사, 집행임원,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 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단서 신설>	第622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다만, 제3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하여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

1.·2. (생 략) 3. 第402條 또는 第424條에 定하는 權利의 行使 ②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8---------- ② (현행과 같음)

4. 검토의견 : 일부찬성, 일부반대의견

(1) 개정안 중 종류주식의 하나로 차등의결권주를 추가하자는 안에 찬성합니다. 상법이 1주1의결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미 이에 대한 예외로서 보통주 이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비롯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주식 등 여러 가지 종류주식을 발행할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등의결권주의 발행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주주와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 차익 내지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 사이에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발행을 허용하면 기업을 이끄는 주주에게 장기적 계획을 세워 좋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순환출자 등으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길을 열어 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하여 고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고통을 받을 염려를 줄여 줍니다. 종류주식의 발행은 정관에 의하여야 하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됩니다.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종류주식을 매수할 때에 정관과 등기를 통하여 그가 매수하려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를 등이 이런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경영판단의 법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비록 그 결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는,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 실무에서 위법성조각 사유 혹은 책임조각 사유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 문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개정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둘러싼 민사적.형사적 공방은 여전할 것이므로 현재의 실무와 개정안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어, 그다지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판단의 법칙을 법제화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경영판단의 법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위임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즉,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 특히 영미법상 인정하는 '지배주주와 이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공정의무'(fairness to minority shareholders)1)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법 제382조의3이 신설되어 이사의 충실의무가 법제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신설된 충실의무와 종래의 선관의무의 성격에 관하여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고 판례 또한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상태의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되지 않으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권만 강화하는 입법이므로 시기상조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문언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1)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2) 경영권 위협에 관한 실증적 사례가 매우 드문 점, 3) 현재의 방어시스템에 의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적대적 인수 합병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는 점, 4) 기업이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투자를 회피하는 이유가 경영권 방어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점, 5) 경영권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국가 전체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점, 6)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권 방어보다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기존 경영권을 강화시켜주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일몰(sunset)제도의 도입이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남용하여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개정안의 유지청구권보다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